

발급번호 : 0507-6045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『축산물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5년 09월 01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이인용



신청인	성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도축장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5년 08월 29일
	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043-535-3412	

(단위 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10784200041(422)	1	110784200041(445)	1	110784200041(469)	1+
110784200041(423)	1	110784200041(451)	1+	110784200041(470)	1
110784200041(424)	1	110784200041(452)	1	110784200041(471)	1
110784200041(425)	1+	110784200041(453)	1+	110784200041(472)	1
110784200041(426)	1	110784200041(455)	1+	110784200041(473)	1+
110784200041(427)	1+	110784200041(458)	1	110784200041(474)	1
110784200041(428)	1+	110784200041(460)	1+	110784200041(475)	1
110784200041(429)	1	110784200041(461)	1	110784200041(476)	1+
110784200041(430)	1	110784200041(462)	1	110784200041(477)	1+
110784200041(431)	1	110784200041(463)	1+	110784200041(478)	1+
110784200041(432)	1	110784200041(464)	1+	110784200041(480)	1+
110784200041(433)	1	110784200041(465)	1+	110784200041(481)	1+
110784200041(436)	1	110784200041(466)	1+	110784200041(482)	1+
110784200041(438)	1	110784200041(467)	1	110784200041(483)	1
110784200041(443)	1+	110784200041(468)	1	110784200041(484)	1

전체 : 45두 (1+ 등급 : 20 1 등급 : 25 2 등급 : 0 등외등급 : 0)

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5-09-01 09:15:17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납품내역은 『축산물 시행규칙』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시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
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 g/㎡ (재활용품)]

원본대조필

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4.16.>

제 충북10-20250829-0006-0 호

도축검사증명서

- 가축의종류 : 돼지
-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58 (110784200041)
- 중량 : 지육 4776 kg, 내장 등 기타 812 kg
- 작업장명 : (주)팜스코
- 검인번호 : 충북10
- 도축일 : 2025년 08월 29일
- 도축의뢰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남욱

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]여, [O]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 수출 국가명 :

-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43.5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5년 08월 29일

검사관 소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명 : 황예령 (서명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21879)